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8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
일부개정규칙안  
【의원발의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12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12. 17.

운영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- 발 의 자: 장호섭 의원 외 6명(박정환, 손범구, 박종길, 남현주, 정순옥, 김정희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
- 회부일자: 2024. 11. 6.
- 검토기간: 2024. 11. 11. ~ 11. 14.

## 2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개정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」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, 채용응시요건 개선, 용어 정비 등 인사 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(안 제8조제3항, 안 별지 제1호서식)
  -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도 면제 대상자로 추가
- 시간선택제임기제·한시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개선(안 별표 5의3)
  - 고등학교·전문대학 졸업자 → 고등학교·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

- 응시원서 상의 ‘탈모’ 용어 개정(안 별지 제1호서식, 안 별지 제2호서식)
  - ‘탈모’ 라는 용어 대신 ‘모자 등을 쓰지 않은’ 이라는 표현으로 수정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5조
  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11. 6. ~ 11. 17.) 결과: 의견 없음.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5조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「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」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
  - 안 제8조제3항은 저출산으로 인한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‘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’ 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두었음.
  - 안 제17조제5항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서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을 6급 이하로 한정하는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음.
  - 안 별표 5의3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의 학력 자격기준을 ‘고등학교·전문대학 졸업자’ 에서 ‘고등학교·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’ 으로 변경하였음.

-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,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적임기제 공무원의 학력 자격기준 완화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## 【 관계 법령 】

### □ 공무원임용시험령

제35조(응시수수료) ①~② 생략

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3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4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### 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17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)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. 다만,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 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  8.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, 통계·전자계산·대외통상·환경·교통·도시공학 분야,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  9. ~ 12. (생략)
- ② ~ ⑤ (생략)